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영호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임원 구성 및 사업 수행 주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상근임원 감축(안 제22조 제2항)

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상근임원을 “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”에서 “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 이사”로 감축하려는 것임.

나.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시 자료 제출(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)

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법 제1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

3) 행정규제 :

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”를 “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”로 한다.

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 ④ 재단은 「민법」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「민법」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.

1. 조직·회계·예산 관련 자료

2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

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임원) ① (생략) ② <u>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</u> 3명 이내의 <u>이사 및 감사</u> 는 상 근(常勤)으로 한다. ③ ~ ⑥ (생략)	제22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이사장</u> ----- ----- <u>이사</u> ----- -----.
제32조(지도·감독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2조(지도·감독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재단은 「민법」 제86조에 따른 <u>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</u> <u>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</u> <u>에</u> <u>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청산사</u> <u>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</u> <u>「민법」 제94조에 따른 청산종</u> <u>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.</u> 1. <u>조직·회계·예산 관련 자료</u> 2. <u>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</u> <u>산하거나 접수한 문서·도서</u> <u>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</u> <u>물·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</u> ⑤ <u>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</u> <u>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</u> <u>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</u> <u>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</u> <u>무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</u>
<u><신설></u>	

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
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
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
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
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
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	
연 락 처	(02) 2076 - 1072